

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

2026. 10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검토 배경	1
II. 정책 추진 현황	2
1. 장기연체 정리	2
2. 연체 양산 구조 개혁	3
3. 주요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	4
III. 주요 추진 과제	5
1. 장기연체 정리	6
2. 연체 양산 구조 개혁	7
IV. 향후 일정	8

I. 검토 배경

< 대통령 주요 말씀 >

- ◇ **연체채권 관리 문제**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, 관심이 낮아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**제도화하는 방안 필요**(‘26.5.6일, 제20회 국무회의)
- ◇ **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, 채무자, 사회에도 좋음. 갚을 수 없는 빚**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**대책이 필요**(‘26.8.11일, 제35회 국무회의)

□ **지난 1년**은 개인채무자 보호와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에 있어 **획기적인 구조적 전환**을 이룬 한 해

○ 「**개인채무자보호법***」이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(‘25.4월~)

* [추심] 추심총량제, 추심유예제, [채무조정] 자체 채무조정 요청권, [연체채권 관리]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, 연체채권 양도 제한, 주택 경매 유예 등

○ 위기에 처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 시행

① **새도약기금**을 **신설**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**장기연체채권**^{7년↑, 5천만원↓}을 **일괄 매입**하여 연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**소각 또는 채무조정**에 착수(‘25.10월~)

②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·소상공인 대출 관련, **새출발기금**을 통한 **채무조정 지원 폭을 확대**(‘25.9월)

③ **성실상환자 재기 지원**을 위해 역대 **최대규모의 신용사면** 단행(‘25.9월말)

○ 채권회수·효율성 중심의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채무자 보호로 전환하고 **항구화·제도화**를 위한 개혁 조치 발표

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,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 억제, 5년 소멸시효 완성(소각) 원칙화 등을 위한 「**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**」 발표(‘26.2월)

② 연체채권의 최종 종착지로서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장기·과잉 추심이 만연된 매입채권추심업의 정비·규율을 위한 **허가제 전환 방안** 발표(‘26.5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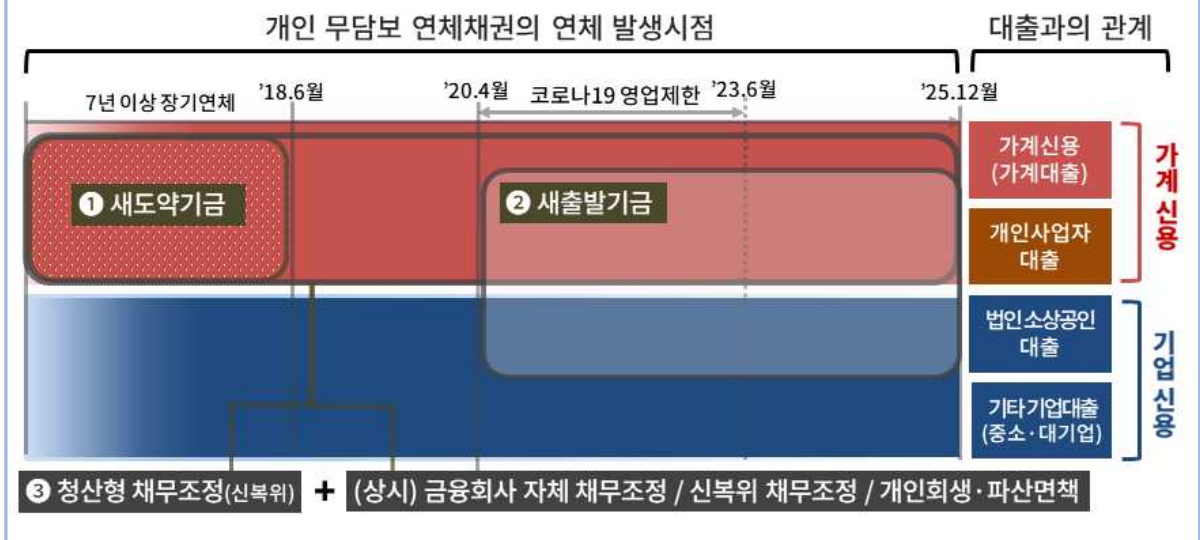
➡ **지난 1년간 추진된 채무조정·연체채권 관련 주요 정책의 현황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·일정을 명확하게 제시**

Ⅱ. 정책 추진 현황

1 장기연체 정리

<정책 추진 체계>

- ◇ 장기화·누적되어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연체채무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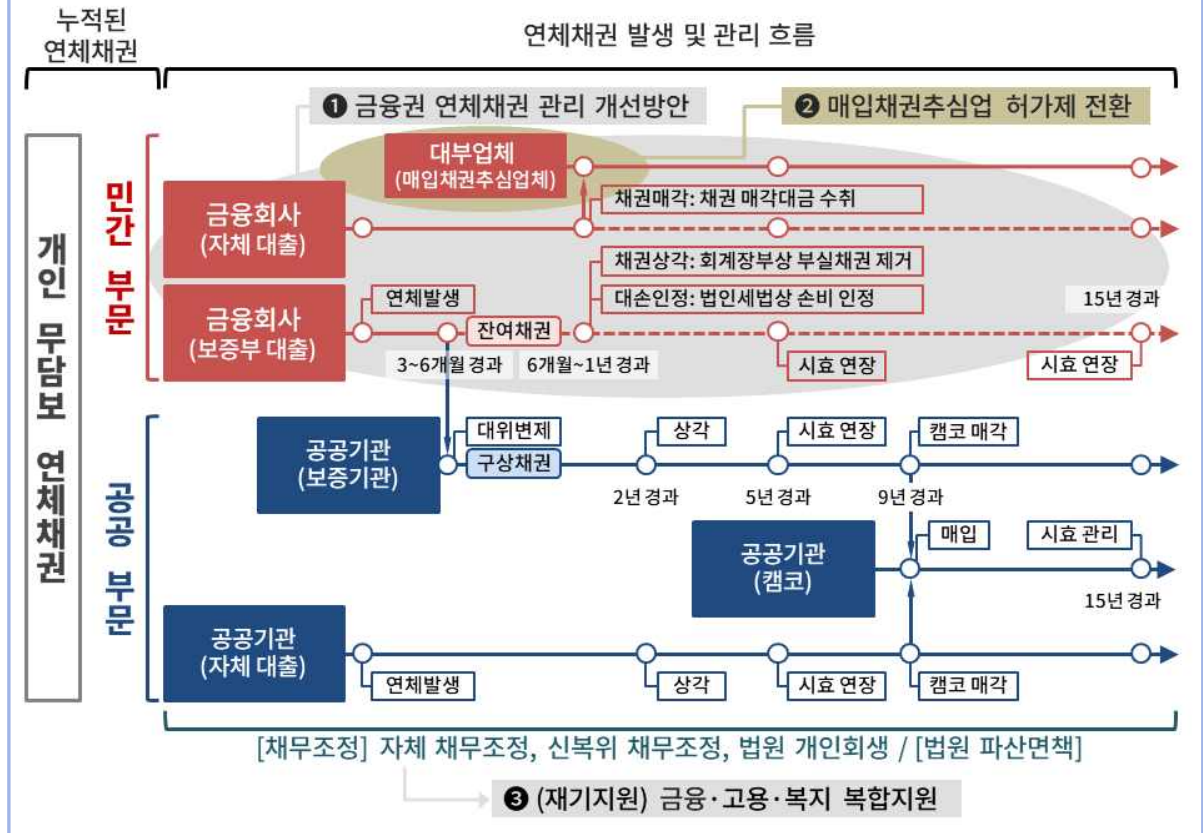


- ☐ ① **새도약기금** 장기연체자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연체채권^{7년↑, 5천만원↓}을 매입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('25.10월~)
- ☐ ② **새출발기금** '20.4~'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('22.10월~)으로, 원금감면 및 금리조정 등 지원
- ☐ ③ **청산형 채무조정** 취약채무자가 5천만원 이하*의 채무를 3년 이상 성실 상환(원금 최대 95% 감면)하면, 잔여 채무는 면책('19.7월~)
 - * 청산형 채무조정(취약채무자 특별면책) 지원대상을 1,500만원→5,000만원으로 확대('26.1월)
- ☐ **신용사면** '20.1월~'25.8월 중 연체한 5천만원 이하 금융채무를 '25년말까지 전액상환한 개인·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* 삭제('25.9월말~)
 - * 연체채무를 상환하더라도 '연체했었다'는 이력정보가 금융권에 최대 5년간 공유

2 연체 양산 구조 개혁

<정책 추진 체계>

- ◇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연체 초기 **공적·사적 채무조정**을 **활성화**하고, **반복된 매각·시효연장 관행** 등을 **개선**



- **①연체채권관리** 금융권의 회수 중심 연체채권 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「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*」 마련('26.2월)

- * ①금융회사가 연체 초기 단계에서 자체 채무조정을 주도하도록 유인 구조 재편
 ②원채권자의 채권 매각시 점검·보고의무를 강화하여 반복적 연체채권 매각 제한
 ③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→ "원칙 시효완성(5년), 예외 시효연장" 원칙으로 개선

- **②매입추심업 개편** 장기·과잉 추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채권을 매입·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개편 추진*('26.5월)

- * 현재 등록제 운영 → 영세업체가 난립('25년말 금융위등록 911개사)하고, 채무자 보호가 취약

- **③복합지원**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재기지원을 위해,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*를 연계·제공('24년~)

- * (고용) 국민취업지원 등 / (복지) 공적급여, 긴급복지 등 / (소상공인) 희망리턴패키지

3 주요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

[1] 장기연체 정리

- **새도약기금** '26.9월말 기준 11.8조원(98.3만명) 규모 채권을 매입하여 사회취약계층 등 3.9조원(45.2만명) 규모 채권을 우선 소각
- **새출발기금** '26.9월말 기준 14.5조원(15.7만명) 규모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,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
- **금융회사 자체노력** 민간 금융권도 정부의 정리 노력에 부응하여 자체 채무조정·소각, 매각·시효완성 관행 개선 등 적극 협조

▶ 정부출범('25.5월) 이후 5대 금융지주 자체 채무조정, 소각 노력 등 실적 증가

☞ 채무조정 : ['25.上] 1.65조원 → ['25.下] 2.66조원 → ['26.上] 2.27조원
소각 : ['25.上] 4,073억원 → ['25.下] 4,708억원 → ['26.上] 15,211억원

➔ **장기연체 · 코로나대응채무**는 신속히 정리하고, 금융권도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**연체채권을 조기에 정리**할 수 있도록 유도

[2] 연체 양산 구조 개혁

- **공공부문 연체채권관리** 그간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노력은 민간 부문 중심으로 진행 → 공공부문도 관리 관행 개선*에 착수

* 15년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, 상환능력 없는 경우 5년 시효완성(채무종결) 등

- **금융권 연체채권관리**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('26.2월)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규정 개정 등 제도화* 지속 추진 필요

* [자체채무조정] ①채무조정 요청권 조기 안내 의무화, ②원금 감면분 손비 인정 등
[매각] 매입업체의 ①매도전 추심 적정성 확인, ②매도후 불법추심 점검·보고 등
[소멸시효] ①세법상 시효완성 조건부 손비 인정, ②공시송달특례 폐지 추진 등

➔ **연체 양산 구조의 개선**을 위해, 채무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**연체채권 관리체계를 보완**하는 한편 **제도화 · 항구화 노력**도 지속

Ⅲ. 주요 추진 과제

〈 기본 방향 〉

- ◇ 장기연체 · 코로나연체 채무 정리의 가시적 성과 창출
- ◇ 연체 양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화 · 항구화 노력 지속

〈 세부 추진방안 〉

장기연체 채무정리	① 개인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방안 강구 ▪ 잔여 장기연체채권(5천만원 이하, 7년이상 연체)의 대다수를 보유 하고 있는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 독려 ② 자영업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코로나시기 연체채무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추진 ▪ 채무감면 → 신용회복 → 재기지원의 단계별 지원 강화 ③ 은행 등 민간의 채무조정·소각 노력 촉진 ▪ 채무조정 관련 고객책임·시장규율 강화 등 추진
연체 양산 구조 개선	① 연체채권 관리원칙 전환 : ‘회수중심’ → ‘재기중심’ ▪ 공공 15년이상 연체채권 일괄소각, 상환능력 없는 장기소액채권 시효완성(5년) 원칙화 등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▪ 민간 관련 규정 개정 등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 조치 및 연체채권 담보부 대출 현황 점검 추진 ② 채무조정→신용회복→자립의 단계별 재기지원 강화 ▪ 채무조정 법원 회생·파산 신청절차에 대한 지원체계(신복위) 강화 ▪ 신용회복 연체채무 완제시 신용평가 불이익을 줄여 신속 재기지원 ▪ 자립지원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 연계범위 및 접근성 확대

1 장기연체 정리

① **개인연체** 새도약기금 잔여 매입대상 연체채권(5천만원이하, 7년 이상 연체)중 대다수를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를 적극 독려

○ 연체채권의 종착지인 대부업권이 누락될 경우, 다중채무 정리가 어려워* 장기연체자의 재기지원이라는 제도취지 훼손 우려

* 은행·카드사 채무를 소각해도, 대부업권의 연체채무로 인해 연체상태 지속

➡ 정책 수혜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채권은 전부 매입하되, 대부업권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('26.下)

② **자영업자**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해 채무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

○ 코로나시기 연체채무 누적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, 향후 금리 상승 등을 감안시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

➡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채무조정,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로 지원*을 강화

* (채무조정) 장기('23.6월 이전 연체) 1억원 미만 연체채권 일괄매입 → 특별 채무조정 (신용회복) 채무자의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(예 : 성실상환 인센티브 등) (재기지원)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연계프로그램 안내 강화, 추가 연계 등

③ **민간확산** 금융회사는 넓은 고객 접점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, 복지연계 전달체계 등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 가능

➡ 고객책임·시장규율 강화*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·소각 등 자발적인 채무정리 노력을 지속**하도록 유도

* (예) [고객책임]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, 신용상담 강화,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등 [시장규율] 포용금융 실적공시 추진, 포용금융 평가체계 반영 등

** 5대 금융지주(농협·우리·신한·KB·하나) '26.하반기 채무조정·소각 계획 : (채무조정) 2.5조원, (시효전소각) 7,704억원, (시효완성채권) 3,649억원

2 연체 양산 구조 개혁

① 연체채권 관리관행 개선 기존의 회수 중심 연체채권 관리원칙을 재기 중심의 “조기 채무조정 + 시효 5년 후 완성” 원칙으로 전환

- [공공부문] 공공부문이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*

* ①15년이상 연체채권 일괄소각, ②상환능력 없는 소액연체는 5년 시효완성 원칙화, ③보증부대출 연체초기 채무조정 절차 마련, ④상각 전 원금감면 허용 등

- [금융권] ① 자체채무조정 강화, ② 반복매각 제한, ③ 시효완성 원칙 확립 등 금융권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④ 연체채권 담보대출 점검 추진

* ① 업권별 모범사례 반영 → 「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」 등 개정('26.4분기)
② 원채권자의 점검·보고의무 반영 → 「채권 매각 가이드라인」(행정지도) 개정('26.8.31, 완료)
③ 「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시행세칙」 개정('26.10.12, 완료), 「소송촉진특례법」 개정안 통과 추진
④ 장기·과잉 추심 유인을 제공하는 연체채권 담보대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

② 재기지원 강화 연체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 조정 → 신용회복 → 자립지원의 각 단계를 촘촘히 보강

- [회생·파산 지원] 취약채무자(기초수급자 등)가 신복위를 통해 법원에 개인회생·파산신청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고도화*

* ▲대표 상담번호(☎1375, 10월~)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, ▲지원인력 확충, ▲신복위·법구공 지부간 협력체계 구축, ▲회생·파산 연계 업무 표준화, ▲전산연계 활성화 등

- [연체이력 활용기간 합리화] 연체채무를 완제한 채무자의 신용평가 불이익을 줄여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

- [복합지원 강화] 취약·서민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·복지·고용 연계 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 및 연계분야·기관 확대*

* ▲특화 금융상품(적금대출 등) 제공 ▲민관공동센터 개소 ▲소상공인 등 연계 분야 확대

IV. 향후 추진계획

구 분	조치사항	일정
1. 장기 연체 채무정리		
①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 독려	참여 확대방안 마련·발표	'26.下
② 장기 연체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추진	채무조정프로그램 예산안 반영 등	'27년~
③ 은행 등 민간 채무조정·소각 지속	실적 공시	'26.4분기
2. 연체 양산 구조 개선		
① 연체채권 관리관행 개선		
① 공공부문 연체채권 관리 개선	방안 마련·발표	'26.10월
②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		
- 자체 채무조정	내부기준 모범사례 개정	'26.4분기
- 시효완성	소송촉진법 개정	계속
- 연체채권 담보대출 현황 점검	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	'26.4분기~
② 재기지원 강화		
① 연체이력 활용기간 합리화	방안 마련·발표	'26.4분기
② 신복위 법원 개인회생·파산 절차 지원		
- 대표 상담번호(☎1375) 활용 홍보 강화	상담번호 시행	'26.10월
- 개인회생·파산 지원인력 확충	-	'26.4분기
③ 복합지원 강화		
- 복합지원 접근성 확대	특화 금융상품 제공	'26.7월~
	민·관 공동센터 개소	'26.7월~
- 연계분야 확대	소상공인 등 연계 분야 확대	'26.9월~